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18
----------	-------

발의연월일 : 2022. 9. 29.

발의자 : 이양수 · 김선교 · 박덕흠  
박정하 · 위성곤 · 윤영석  
이달곤 · 이용호 · 정운천  
조명희 · 최춘식 · 홍문표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1989년부터 시행한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을 위해 내수면가두리양식장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이후 약 20년에서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보상대상 양식시설물 및 객관적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가 소실되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어렵고, 보상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은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보상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열람

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민간위원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형법」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등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하였음.

이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하여 보상금의 산정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대신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 또한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책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칙 적용 시 「형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속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 다. 상속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3항 신설).
- 라. 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별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상속인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상속인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의 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4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보상금)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lt;신 설&gt;</p>	<p>제8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p>
<p>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 ② (생 략)</p> <p>&lt;신 설&gt;</p>	<p>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상속인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p>

	<p>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상속인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의 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p>
<u>③ (생략)</u>	
<u>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p><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p> <p><u>⑤ -----제4항-----</u></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u>⑤ (생략)</u>	
<p>제11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인정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p>	<p><u>⑥ (현행 제5항과 같음)</u></p> <p>제11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제9조제5항-----</p> <p>-----</p> <p>-----</p> <p>-----</p> <p>-----</p> <p>-----</p> <p>-----</p> <p>-----</p> <p>-----</p> <p>-----.</p>
<u>② (생략)</u>	
<p>제13조(소멸시효) 보상금을 지급</p>	<p>제13조(소멸시효) -----</p>

받을 권리는 제9조 제4항의 결정서 정본(이)의 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의 결정서 정본을 말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신 설>

## 제9조 제5항

제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  
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